

(구)졸업연기제도

학사학위

취득유예제도

안내

2022년 12월
교무팀

01

시행배경

02

운영방안

03

추진일정

04

Q&A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시행일:2019. 1. 1.] 제23조의5 제3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6.]

교무처-총학생회 학사제도 협의체 운영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관련 논의 진행

- 학사제도 협의체 운영하기로 합의(2019.06.11.)
- 기존 졸업연기 관련 절차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변경될 예정임을 알리고 졸업 유예비 폐지 검토 결과를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2019.08.12.)
-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관련한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학생 의견 수렴함(2019.09.25.)

졸업유예비 폐지에 대한 지속적인 문의

- 졸업유예비 폐지 여부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시행에 대해 지속적인 문의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와 관련하여 타대학에서 사례 조사 요청

8학기 이상 초과학기자 분류표

졸업요건 충족여부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수강 신청	등록금	학적 구분		
졸업요건미충족자	X	X	O	학점당 등록금	재학생		
		O	X				
		X	O				
		X	X				
		졸업미통과자 성적미이관자 복수학위파견자	X	학점당 등록금	재학생 (수료)		
	O			소속학과 등록금의 10%			
				파견학기당 10만원			
				1학기당 10만원			
				학점당 등록금			
졸업요건충족자	O	O	O	X	졸업유예비 폐지	재학생 (학사학위 취득유예)	

8학기 이상 초과학기자 명칭 구분

졸업요건 충족여부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수강 신청	등록금	학적 구분
X	X	X	O X O X	학점당 등록금	재학생
졸업요건 미충족자	O	X	O	학점당 등록금 소속학과 등록금의 10% 파견학기당 10만 원 1학기당 10만원	재학생 (수료)
졸업요건 충족자	O	O	O X	학점당 등록금 졸업유예비 폐지	재학생 (학사학위 취득유예)

초과학기생

수료생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운영방안

(구)졸업연기제도, (신)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운영방안 비교

운영방안	졸업연기제도 기준(~2019년 8월 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변경(2020년 2월 졸업~)
신청자격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교과, 비교과)을 모두 갖춘 자
신청제한	없음	조기졸업자, 졸업요건 미충족자
신청횟수	없음	재학 연한 이내에서 최대 4학기까지 가능
가능기간	재학 연한 이내	재학 연한 이내
수강신청	최초 신청 시, 수강신청자만 가능	매 학기 신청 가능
학적변동	학적변동 가능(휴학, 복수/부/마이크로전공 신청)	학적변동 불가(휴학, 복수/부/마이크로전공 신청)
등록여부	소속학과 등록금의 10% 납부 (수강신청 시, 학점당 등록금)	졸업유예비 폐지 (수강신청 시, 학점당 등록금)
서류발급	재학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운영방안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란?

졸업요건(교과, 비교과)을 모두 충족한 자가 매 학기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학연한
이내에서 일정기간(최대4회)까지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

누가 해당이 되나요?

- 1 졸업요건(교과, 비교과)을 모두 충족한 자
- 2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당시, 재학연한이 남은 자

재학연한이란?

신입학생 재학연한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일반전공 (건축학(5년), 의학전공 제외)	정규등록(8학기)															초과등록				
	정규등록(7학기)-조기졸업																			
	정규등록(6학기)-조기졸업																			
건축학전공(5년)	정규등록(10학기)															초과등록				
	정규등록(9학기)-조기졸업																			
	정규등록(8학기)-조기졸업																			
의학전공	정규등록(12학기)															초과등록				
	정규등록(11학기)-조기졸업																			
	정규등록(10학기)-조기졸업																			

운영방안

재학연한이란?

편입학생 재학연한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일반전공 (건축학(5년) , 의학전공 제외)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4학기)											초과등록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3학기)-조기졸업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2학기)-조기졸업																		
건축학전공(5년)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6학기)											초과등록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5학기)-조기졸업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4학기)-조기졸업																		
의학전공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8학기)											초과등록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7학기)-조기졸업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6학기)-조기졸업																		

운영방안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란?

졸업요건(교과, 비교과) 을 모두 충족한 자가 매 학기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학연한 이내에서 일정 기간(최대4회) 까지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

누가 해당이 되나요?

재학연한별 유예 가능 기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시, 이수 재학연한	가능 유예기간
재학연한(16학기) 중, 12학기 이하 재학	4학기 가능
재학연한(16학기) 중, 13학기 재학	3학기 가능
재학연한(16학기) 중, 14학기 재학	2학기 가능
재학연한(16학기) 중, 15학기 재학	1학기 가능
재학연한(16학기) 중, 16학기 이상 재학	유예 불가, 졸업 처리

* 소속 단과대학별로 재학연한 확인 필요

운영방안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란?

**졸업요건(교과, 비교과) 을 모두 충족한 자가 매 학기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학연한
이내에서 일정기간(최대4회) 까지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

누가 해당이 되나요?

신입학생 유예 가능기간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정규등록(8학기)																→ 4학기 가능
정규등록(8학기)								초과등록(1학기)								→ 4학기 가능
정규등록(8학기)								초과등록(3학기)								→ 4학기 가능
정규등록(8학기)								초과등록(6학기)								→ 2학기 가능
정규등록(8학기)								초과등록(8학기)								→ 신청 불가

운영방안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란?

**졸업요건(교과, 비교과) 을 모두 충족한 자가 매 학기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학연한
이내에서 일정기간(최대4회) 까지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

누가 해당이 되나요?

편입학생 유예 가능기간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4학기)								→ 4학기 가능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4학기)				초과등록(1학기)				→ 3학기 가능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4학기)				초과등록(2학기)				→ 2학기 가능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4학기)				초과등록(3학기)				→ 1학기 가능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4학기)				초과등록(4학기)				→ 유예신청 불가

운영방안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절차
2023년 2월 졸업 대상자 기준



| 무엇이 달라지나요?

졸업유예비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요?

수강신청 가능

- 신규 수강만 허용(단, 기 이수한 과목 중 “F” 성적을 받은 과목만 재수강(대체지정과목 포함) 가능)
(* 기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하여 “F” 학점을 받았을 경우, 졸업사정에서 탈락할 수 있어 재수강 허용 불허)
- 본 수강신청 기간 중 특정 날짜에 신청 가능

운영방안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란?

**졸업요건(교과, 비교과) 을 모두 충족한 자가 매 학기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학연한
이내에서 일정기간(최대4회) 까지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학사학위취득유예생 등록 구분

수강신청 여부	신청학점	납부금액	
수강신청 X	0학점	등록금 미부과	← 졸업유예비 폐지
수강신청 O	1~3학점 이하	등록금의 1/6	
	4~6학점 이하	등록금의 1/3	
	7~9학점 이하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 * 현재 등록 일정 기준, 정규학기 개강 전 1회차(본등록) 기간에만 등록 가능
- * 수강정정 및 수강포기 불가

운영방안

무엇이 달라지나요?

-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 취소 불가**
-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
- **복수/부/마이크로전공 등 신청 불가**
- 유예자가 수강 신청 후, **폐강의 사유로 수강 신청이 어려울 경우 해당 등록금은 환불 처리**
- 도서관 이용(열람실, 도서대출 등)은 재학생과 동일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불가(생활비대출 포함)
단, 국가장학금 수강신청자의 경우 한해 수업료 범위 내 장학금 신청가능(수혜횟수 8회 범위 내)
- 외국인 학생의 졸업요건 중 "토픽 4급 이상" 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불가할 경우, 등록금을 부과하지 않음

왜 신청 해야하나요?

- 졸업 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매 학기**에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 해야함
- 학사학위취득유예 **미신청시**, 해당 학기에 **졸업**
- **4회차** 학사학위취득유예 **종료 시**, 최종 **졸업 처리**

운영방안

복수/부전공 및 교직이수를 위한 졸업연기제도란?

졸업요건(교과, 비교과) 을 충족한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복수/부전공 및 교직이수를 위해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

운영방안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복수/부/마이크로전공 및 교직이수를 위한 졸업연기제도
신청자격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교과, 비교과)을 모두 갖춘 자	
신청제한		조기졸업자, 졸업요건 미충족자
신청횟수	재학 연한 이내에서 최대 4학기까지 가능	없음
가능기간		재학 연한 이내
수강신청		매 학기 신청 가능
학적변동	학적 변동 불가(휴학, 복수/부/마이크로전공 신청)	학적 변동 가능(휴학, 복수/부/마이크로전공 신청)
등록여부	졸업유예비 폐지	수강신청 시 학점당 등록금 납부
서류발급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언제 신청 해야하나요?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후
일정 기한에 신청(학사일정 및 공지사항 확인)

1학기 : 1월 초

2학기 : 7월 초

Q & A

| Q)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추진 배경은?

A)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및 동법 시행령의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유예) 개정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규정의 보완이 요구됨

최근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장기적인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을 연기하는 학생들의 졸업유예비를 폐지하고자 함

| Q)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분류는?

A)

졸업요건(교과, 비교과)을 모두 갖춘 학생이, 매 학기마다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최대 4회)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

구분	내용
대상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학적구분	학사학위취득유예생
기간	재학연한에서 등록한 재학 기간을 뺀 기간
수강의무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않음

* 재학연한이란?

- 수업연한이 8학기인 경우, 최대 16학기까지 재학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
- 휴학(일반/군/질병/출산 등) 횟수는 포함하지 않음

Q&A

| Q)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시행의 기본 취지는?

A)

금번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의 목적은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의 **졸업유예비를 폐지**하고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의 **학적 관리를 좀 더 엄격히** 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 Q) 현재 초과휴학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불가능한가요?

A)

초과휴학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가능했지만, 향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시행과 맞물려 초과휴학은 제한하고자 함

Q&A

| Q) 수강신청하고 수업료를 납부했는데 학교의 사정으로 폐강이 된 경우 수업료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학생은 **개강 전 본수강 신청**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수강정정 및 수강포기를 할 수 없음**.

(수강 신청하고 개강 전 1차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개강 직전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삭제됨)

수강 신청하고 수업료를 납부했는데 학교의 사정으로 폐강이 된 경우에는 수업료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을 진행함

| Q)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불가피하게 취소를 해야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를 하고 졸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함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서 작성 → 학과 제출 → 교무팀 승인 → 해당 학기 졸업 처리
※ 해당 학기 졸업식 이전까지만 취소 가능함